

예비군법(시행령 포함)

문 19.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최종 선발예정일이 속한 해에 18세가 된 대한민국 국민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지원하여 직장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그 직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때에 종료된다.
- ③ 「병역법」상 현역병 중 전상·공상·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자는 예비군 조직에 포함된다.
- ④ 지역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해당 거주지 관할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방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문 20.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「통합방위법」상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우에는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포함하여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이라도 직장예비군을 편성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지역예비군 중대는 동·읍·면 단위로 설치하고 소대·분대는 통·리 단위로 설치하되,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.
- ③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비군자원인 보충역의 병을 그 거주지가 아닌 시·군·자치구 내 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.
- ④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한 감사에서 직장예비군이 최근 5년간 2회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명할 수 있다.

문 21. 예비군법령상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- ① 같은 건물이나 구내(構內)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② 같은 직장 또는 같은 계열의 직장이 같은 도(道) 내에 있는 경우에 직장단위로 편성된 직장예비군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③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자원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④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중에서 같은 산업단지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

문 22.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편성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방부장관은 전역자의 인사명령서를 전역일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, 병무청장은 이를 다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.
- ② 병무청장에게 인사명령서를 보낼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지만, 공문서의 송수신 체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낼 수 있다.
- ③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.
- ④ 육군참모총장·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이 「병역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,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 중 「예비군법」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시 예비군에 편성해야 한다.

문 23.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수임군부대의 장과 수탁경찰서장은 「민방위기본법」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을 위해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.
- ②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③ 동원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보류원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보류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원의 보류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④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동원을 연기할 수 있고, 그 사유가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도 그러하다.

문 24. 예비군법령상 재해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예비군대원이 동원명령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.
- ② 재해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에 관하여는 「군인연금법」을 준용하되,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재해보상금의 지급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의 계급 및 호봉과 같은 현역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.
- ③ 장애보상금을 받은 예비군대원이 그 상이(傷痍)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.
- ④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·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 그 지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- 문 25. 예비군법령상 예비군표지장의 제식(制式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예비군제복을 착용하는 때, 베레모의 경우 모표는 그 중앙이 베레모 앞면의 중앙과 일치하게 부착한다.
 - ② 견장은 예비군제복 및 점퍼의 상의 어깨선 양측에 월계수 잎이 어깨 부분으로 향하도록 부착한다.
 - ③ 흉장은 근무복 상의 명찰 상단 우측에 부착한다.
 - ④ 휘장의 지도는 중대장의 경우 금색으로 도금하되, 예비군제복 상의 좌측 호주머니 단추부분에 부착한다.

문 26. 예비군법령상 긴급조치 및 보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(○)과 옳지 않은 것(×)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- ㄱ. 무장공비가 마을에 침투하였을 때, 수탁경찰서장은 무장공비를 체포하기 위하여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포에 지장을 주는 주민의 재산을 제거할 수 있다.
- ㄴ. 수탁경찰서장이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, 기간, 구역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.
- ㄷ. 수탁경찰서장이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였을 때, 수탁경찰서장은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조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ㄹ. 재산을 제거하는 긴급조치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.
- ㅁ. 보상심의회는 심의를 거쳐 결정된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,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	<u>ㄱ</u>	<u>ㄴ</u>	<u>ㄷ</u>	<u>ㄹ</u>	<u>ㅁ</u>
①	○	×	○	×	○
②	×	○	×	○	×
③	○	×	×	○	×
④	×	×	○	×	○